

대통령령 제 호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제2항 중 “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”를 “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<제○호, 2021.○○.○○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의4 【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】 ① (생략)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<u>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u> <u>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/u>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3조의4 【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】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<u>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<u>부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u>